

# NEWSLETTER

April 2021

공정거래 그룹

Antitrust & Competition Group

## CONTACT



변호사 정 환

T: 02.772.4940  
E: [hwj@leeko.com](mailto:hwj@leeko.com)



변호사 이인석

T: 02.6386.0700  
E: [lnk@leeko.com](mailto:lnk@leeko.com)



변호사 김지훈

T: 02.772.5978  
E: [jhg@leeko.com](mailto:jhg@leeko.com)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2020. 4. 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위의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관련 개정 법	시행령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기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아래와 같이 기존대로 이원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함</li> </ul>	2021. 5. 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b>로부터 5년</li> <li>②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신고 사건:</b> <b>신고접수일(자진 신고 포함)</b></li> <li>② <b>직권인지 사건:</b> <b>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 자료제출 요청, 감정인의 지정,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b></li> </ul>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b>관련 개정 법</b>	<b>시행령 개정안</b>	2021. 5. 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위 조사시 <b>조사공문 교부</b> 의무화</li> <li>조사 과정에서 자료 입수 시 <b>보관조서 제공</b>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공문'에 조사목적·기간대상 등 기재 의무화</li> <li>'보관조서'에 사건명, 제출된 자료·물건의 명칭/수량/제출일자 등 기재 의무화</li> </ul>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	<b>관련 개정 법</b>	<b>시행령 개정안</b>	2021. 5. 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b>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b>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상 <b>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b>로 <b>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b>를 규정함</li> </ul>	
분쟁조정 대상 확대	<b>시행령 개정안</b>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함</li> </ul>		
과징금 환급기산금 요율 정비	<b>시행령 개정안</b>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환급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함</li> <li>❖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된 것에 불과함</li> </ul>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b>시행령 개정안</b>		2021. 5. 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추가함</li> <li>❖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행정예고 중 (~4.22)</li> </ul>		

## I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link](#)

## III.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